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38

발의연월일: 2021. 9. 3.

발 의 자:류호정·장혜영·용혜인

이상헌 · 최승재 · 심상정

이은주 · 배진교 · 최혜영

양정숙 • 유정주 • 이탄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으로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로서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셧다운제"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여 셧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

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오히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인식을 개선하며, 게임과몰입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중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 몰입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게임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과몰입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u>게임과몰입·중독</u> 예	제12조의3(<u>게임과몰입</u> 예방조치
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	등) ①
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	
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u>게임과</u>	<u>게임과몰입을</u>
<u>몰입과 중독을</u>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u>.</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	<u><삭 제></u>
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	
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u><삭 제></u>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	
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 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신 설>

3		 	 		-
		 	 및	절치	}
등여	<u>]</u>	 	 		_
		 	 		_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5(게임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과몰입 등
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
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
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